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공지사항	3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3
첨부파일(2)	3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작성일 2020.12.08 13:1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978

첨부파일(2) 1611043444\_1.jpg 371 hit/225.2 KB [다운로드](#)  
 강진공지사항2.jpg 35 hit/1.37 MB [다운로드](#)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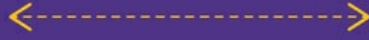
1/3
2020.11.2. 제작

# 비수도권 거리두기

## 2단계

### 방역수칙





## < 모임·행사 >

###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00명 미만



### 2.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1.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4.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5.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6. 홀딩팝

- 집합금지

### 7.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8.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9.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10.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11.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2.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3.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14.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15.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16.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7.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18.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19. 아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0.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21.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 기타 다중이용시설 >

### 1.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2. 파티룸

- 집합금지

###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4.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2.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3.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4.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5.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모임·행사 1.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5.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http://www.gangjin.go.kr>)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6. 홀덤펍▶집합금지 7. 실내체육시설▶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8.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9.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10. 결혼식장▶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1. 장례식장▶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2. 목욕장업▶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3. 영화관/공연장▶좌석 한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4. PC방▶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15. 오락실·멀티방 등▶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6. 독서실·스터디카페▶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17.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18. 아·미용업▶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9. 백화점·대형마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집객행사 금지★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0. 마트·상점(300㎡ 이상)▶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1. 숙박시설▶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2. 파티룸★집합금지 3. 국공립시설▶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2. 스포츠 관람▶10% 이내로 관중 입장 3. 등교▶밀집도 1/3 준수(교고 2/3) 5.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6.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사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 단계 - 생활속 거리두기·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준수사항: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기준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준수사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준수사항: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전국적 대유행·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준수사항: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목록

GANGJIN

***Web Contents***

